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을 법률에 명시함(안 제3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